

		품질/녹색경영 통합 매뉴얼			페이지
		표준 개정 이력 표			1/5
표준명		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			
표준번호					
개정 번호	년월일	개 정		개정조항	개 정 사 유
		부 분	전 면		
1 2	2017.11.13 2018.01.25	o		제 3 조	제정 내부거래위원회 직무 및 권한 강화
작성자	팀 장 이낙형	검토자	경영지원부문장 송기복	승인자	대표이사 이윤규
회 략					

애경산업 주식회사	경영기획팀	표준번호		페이지
		제정일자	2017.11.13	
	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8.01.25	2/5
		개정번호	1	

## 제1장 총 칙

### 제 1 조【목 적】

이 규정은 애경산업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【적용범위】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 3 조【직무와 권한】

1. 위원회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, 주요주주, 관계회사, 기타 이해관계자와 회사간의 거래 (이하 "내부거래"라 한다)를 심사 및 승인해야 한다.

- (1) 상법
- (2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- (3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- (4)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- (5)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
2. 위원회는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사해야 한다.

3. 위원회는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거래에 대해 회사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, 회사에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.

4.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.

5.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내부거래위원회운영규정(이하 "본 규정"이라 한다)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,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.

6.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## 제2장 구 성

### 제 4 조【구성 및 임기】

1. 위원회 위원 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애경산업 주식회사	경영기획팀	표준번호		페이지
		제정일자	2017.11.13	
	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8.01.25	3/5
		개정번호	1	

2.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### 제 5 조 [위원장]

1.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본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3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4.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5.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(이하 "직무대행자"라 한다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주재한다.

## 제3장 회 의

### 제 6 조 [소집권자]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5 항 단서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소집요구일로부터 2 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7 조 [소집절차]

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회의일 직전일까지 위원 각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2.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열 수 있다.

### 제 8 조 [결의방법]

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2.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애경산업 주식회사	경영기획팀	표준번호		페이지
		제정일자	2017.11.13	
	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8.01.25	4/5
		개정번호	1	

3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 9 조【부의사항】

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 및 승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자와의 단일 거래규모가 회사의 자산총액 (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)의 100 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
2.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자와의 거래총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(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)의 100 분의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
3.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

(1)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로서 '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'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

(2) 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위원회에서 승인한 거래 단, 거래승인 대상 및 거래승인의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.

(3) 위원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단, 위원회의 승인을 통한 거래총액의 한도는 본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, 거래총액 한도에 대해서는 각 회계연도에 2회씩 반기마다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4. 제 3 조 제 2 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사전 심사

(1)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

(2)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

5.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단일 거래규모 및 거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,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
6.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 및 승인할 수 있다.

애경산업 주식회사	경영기획팀	표준번호		페이지
		제정일자	2017.11.13	
	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8.01.25	5/5
		개정번호	1	

**제 10 조[관계인의 의견청취]**

1.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**제 11 조[통지의무 및 이사회회의 소집]**

1.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. 통지 받은 이사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,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**제 12 조[의사록]**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**제 4 장 보 칙**

**제 13 조[간사]**

1.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2.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**제 14 조[규정의 개폐]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**부 칙**

**제 1 조[시행일]**

본 규정은 2018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